

국제작가조합연맹
(International Affiliation of Writers Guild:IAWG)
연맹협약서

2017년 10월 9일 채택

연맹협약서 서문

작가헌장

작가는 상상, 유희, 깨달음을 주는 영상창작물의 첫 번째 창작자이자, 문화, 사회, 경제 과정들의 주요 선도자이다. 이러한 창작물과 과정들은 모든 사회에서 그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자로서 법적, 인격적, 그리고 계약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2. 소통과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형태의 검열로부터의 완전히 자유로운 권리.
3. 창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변형 혹은 오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창작물의 모든 활용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
5. 창작물이 작가의 연령,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국적,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불완전성,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사회적 혹은 정치적 소속 혹은 신념 등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창작물이 지닌 장점에 의해서만 출판되거나 제작되게 할 권리.
6. 작가들을 대표해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에 나설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를 조직할 권리.

연맹은 상기 권리들이 작가의 존엄성, 완전성, 복지에 근본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신념에 따라 모든 곳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한다.

1. 창작물의 창작자는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며 해당 창작물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법적, 인격적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활용과 동일성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이 저작권법에 반영되도록 할 것.
2.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이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공연으로 준비되고 제작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할 것. 참여라 함은 캐스팅과 감독의 선정을 포함하고, 작품이 제작되고 배포될 때에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권리도 포함된다.
3. 창작물에 대해 타자가 저작이나 소유를 주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물리칠 것. 예를 들어 영화에 제작자, 감독, 배급사에 “소유적인”¹⁾ 크레딧이 부여되는 행위.
4.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장려할 것.

1) 예를 들어 “누구누구 감독 작품”처럼 그 영화 전체가 마치 감독의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크레딧.

5. 정부, 회사, 이익단체와 같은 집단들이 창작자에게 검열을 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할 것.
6. 모든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작가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단을 추구할 것.
7. 작가가 상상을 자유롭게 펼치고,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작가헌장은 1986년 6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작가조합연맹 정기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헌장은 1987년 6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맹협약서의 서문으로 채택되었다.)

연맹협약서

본 합의서는 수정을 거쳐 2017년 10월 9일 다음의 단체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프랑스 시나리오작가조합(La Guilde), 뉴질랜드 작가조합(NZWG), 뭄바이 시나리오작가협회(SWA), 이스라엘 시나리오작가조합(SGI), 퀘벡 라디오/텔레비전/영화 작가협회(SARTEC), 미국동부 작가조합(WGAE), 미국서부 작가조합(WGAW), 캐나다 작가조합(WGC), 독일 작가조합(VDD), 대영 작가조합(WGGB), 아일랜드 작가조합(WGI), 남아프리카 작가조합(WGSA)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연맹의 목적과 범위

A.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 조합과 조합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보호한다.
2. 연맹 소속 단체들과 공통의 목표 및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작가 단체 및 조직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고, 장려한다.
3. 저작권, 노사관계, 조세 부분에서 적합한 국제법이나 조약들을 얻어내고, 국가들 사이에 더 나은 관계를 촉진한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고취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취해질 수 있는 검열에 반대한다.
4.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회원 협회의 회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회원들을 일방으로 하고 회원들을 고용하거나 회원들의 저작물을 구매하는, 혹은 협력 및 비즈니스나 기타 거래를 도모하는 개별 회사, 법인, 협회 및 단체를 일방으로 하여 양자 사이에서 조화, 진실한 관계, 행동의 일관성 및 상호이해를 함양하고, 수립하고, 유지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5. 연맹 회원 조합의 회원들이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누리고 저작물의 가치에 비례하는 대가를 수령하고, 회원들이 당할 수 있는 착취를 바로잡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원들이 조화롭고 일치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6. 연맹 회원 조합의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
7. 현재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이후 기술적 또는 과학적 발전이나 발견에 따라 구성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는 산업들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에서 조합들에 의해 수립되는 최소 표준 계약을 시행한다.
8. 조합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9. 상기 목적들을 실행에 옮기거나, 심화시키는데 있어 연맹 회원 조합의 회원들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적합한 모든 일들을 수행한다.

B. La Guilde, NZWG, SARTEC, SGI, SWA, VDD, WGAE, WGAW, WGC, WGGB, WGI

와 WGSA는 본 연맹을 구성하며, 연맹 구성의 협약조건은 본 협약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C. 본 연맹의 공식 명칭은 국제작가조합연맹이다.

D. 각 조합은 본 협약에서 달리 명시한 바를 제외하고,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하에 각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맹에 사전고지하지 않은 채 타 조합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조합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신용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본 협약에서 허용된 정도를 벗어나 다른 조합의 대리인으로 자처하거나 자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 어떤 조합도 연맹 회원들에게 제공되거나, 회원 조합들에 의해 보유된 권리 및 특혜를 파기하고, 변경하거나 감소시키는 여타의 연맹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2조. 구조

- A. 연맹은 행정적 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연맹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모든 사안에 관련하여 합의하고 연대 행위를 추구할 수 있다.
- B. 연맹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 C. 연맹 총회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의 간격으로 소집되며, 각 회원 조합은 한 명 이상의 대표자를 보낼 권리를 갖는다. 연맹 총회에 본 협약의 일곱 서명단체들 중 최소한 한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경우 정족수가 충족된다. 총회에 출석한 각 회원 조합은 대표자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찬반 동수 투표의 경우 해당 사안은 폐기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자들의 비용은 이들이 소속된 조합이 부담한다.

각 총회의 의제 초안은 '정책과 조사 그룹'이 작성한다. 각 연맹 회원 조합은 총회의 확정 날짜 최소 한 달 전까지 의제 최종안에 포함될 비즈니스 항목들 및 발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의제 최종안은 모든 회원 조합에 배포된다.

각 총회의 회장은 총회에 의해 임명된다.

총회의 주최 조합은 회의록을 보관하고, 총회 후 한 달 이내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상세 회의록을 각 대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총회 결의안의 요약문은 총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최 조합에 의해(혹은 주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책과 조사 그룹'의 총무에 의해) 모든 조합의 이사회에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약문의 배포 이후 9일의 기간 이내에 총회 결의안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했던 조합이 '정책과 조사 그룹' 총무에게 해당 결의안에 대한 거부를 표하지 않는 이상, 결의안은 비준되고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발효된다. 어떤 조합이 결의안에 거부를 표할 경우, '정책과 조사 그룹' 총무는 그러한 사실을 모든 연맹 회원 조합에 통지한다.

매 세 번째 총회마다 참석한 대표자들의 투표로 회계관리자를 지명한다. 회계관리자의 의무는 연맹 금고에 있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회비를 징수하고, 연맹의 일반운영비, 혹은 총회에서 참석한 대표자들의 투표로 허가된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각 총회에 맞추어 회계관리자는 마지막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총회 시점까지 연맹이 수령하고 지출한 금액의 항목별 기록을 포함하여 연맹의 재무에 대한 완전하고 빠짐없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사본들이 각 대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회계관리자

는 ‘정책과 조사 그룹’ 회의마다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D. 연맹 회원 조합들은 여타 조합 회원들의 경제적 혹은 직업적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 E. 작가들 사이에 국가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연맹의 목적이자 의도이다. 어떤 조합도 다른 조합 혹은 회원들의 경제적 혹은 직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정책, 규칙 혹은 규정을 옹호, 채택, 수립, 유지 및 반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조합도 국적이나 시민권을 기준으로 또 다른 조합의 회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별로 지역적 문화적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가들이 그 나라의 대중매체에 노출되어야 할 필요성과 국가별 대중매체에 합리적인 수준의 현지 콘텐츠 쿼터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F. 본 협약의 서명단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 회원 조합은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연맹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연맹 총무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연맹 총무는 이를 모든 회원 조합들에 배포한다. 회원 조합들의 정족수가 합의하는 경우, 총무는 회원 조합들과 협의하여 요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 회의를 소집한다.
- G. 연대 행위를 통해, 회원 조합들은 각 조합의 이사회에 해당 사안을 숙고하고 행동을 취하고 보고를 하는 영구 혹은 임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회원 조합의 이사회들이 공동으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H. 연맹 회원 조합의 연회비는 영업수익²⁾이 \$500,000 혹은 그 이하인 조합의 경우는 1%의 1/7, 영업수익이 \$500,000를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 1%의 1/3이며, 최저 연회비는 \$100이다[모든 액수는 \$US(미화) 기준]. 회비는 1월 1일에 부과되고, 매년 4월 1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조합의 이전 회계연도 말에 계산된 총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 I. 앞선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준회원 혹은 정회원은 충분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모든 다른 회원 조합의 만장일치 표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 J. 각 정회원 조합 별로 한 명의 대표자들과 한 명의 의장으로 ‘정책과 조사 그룹’을 구성한다. 의장은 회원 조합 중 한 조합의 우량 회원 중에 연맹이 지명하며,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한다. 해당 의장은 연맹의 총무 역할도 겸한다. ‘정책과 조사 그룹’의 의무는 1)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작가의 지위, 연맹의 프로젝트, 공동체, 의사소통, 연맹과 다른 조직들 사이에 연계, 무역, 기술, 스토리텔링 산업의 미래, 연맹의 관리,

2) 단체의 본원적 수입으로 주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총합.

그리고 연맹 회원 조합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과 총회에서 언급된 기타 사안 등 연맹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해 권고를 받으며, 2)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맹의 업무를 지속하고, 3) 총회 승인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이러한 예산을 관리하며, 4) 각 총회에 의제를 발의한다. 필요한 경우, 정회원들은 연맹이 '정책과 조사 그룹'의 회의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3조. 회원의 지위, 혜택, 책임

A. 연맹의 회원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1) 최소한 시나리오 작가들을 대표해야 하며, 관련 국가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의 독점적 혹은 대표적 단체여야 한다. 2) 단체협약 혹은 표준계약을 협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직업적 성취도에 따라 구간별 혹은 비율로 책정된 형태의 회비를 징수한다. 4) 민주적 원칙들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5) 정관과 은행 계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본 연맹 협약에 서명하고, 연맹 협약의 조건들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B. 연맹의 준회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회원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맹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준회원 지위는 2회에 걸친 총회 동안 유지되며 갱신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연맹은 준회원 조합을 대표하는 한 명의 대표자에 대해 총회 참석 비용을 지불한다.

C. 각 회원 조합은 최소한 해마다 한 번씩 타 조합에게 자신에게 소속된 회원의 이름, 주소, 회원 종류가 기입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 자격 요구 조건들의 사본이 또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조합은 이러한 요구 조건의 차후 변경 및 개정에 대해 다른 조합들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D. 연맹 회원 조합의 기존 회원 작가와 신입 회원 작가는 해당 조합의 회원 의무 사항으로서 본 연맹 협약의 조건들에 구속되며, 각 회원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자체 규칙 및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E. 타 회원 조합의 독점적 단체 교섭 관할권에서 일하는 특정 회원 조합의 회원 작가는 관할권을 가진 조합에 가입하고, 요구되는 기본 회비 및 기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조합의 규칙 및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작가는 자신의 원래 조합의 회원 자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F. 1. 작가는 어떤 회원 조합의 관할권 내에서 해당 조합의 단체 교섭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또는 해당 조합의 불공정 혹은 파업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없다.

2. 어떤 연맹 회원 조합의 관할권에서 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 중인 작가는 해당 회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3. 어떤 연맹 회원 조합의 관할권에서 일하고 있는 작가는 해당 회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4. a) 작가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신의 저작물이 제작되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국가를 관할권으로 둔 연맹 회원 조합의 단체 교섭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체 교섭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가가 거주하는 국가의 단체 교섭 협약을 적용한다.
 - b) 저작물의 제작을 진행하는 둘 이상의 회사들이 둘 이상의 국가들에서 해당 제작을 위한 주요 사업장을 가진 경우, 이를 공동 제작으로 인정한다. 특정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가 협업하는 제작은 공동 제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 제작의 경우, 작가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단체 교섭 협약에 적용을 받는다.
 - c) 본 F항 4호가 회원 조합의 운영 규칙과 상충되는 경우, 이러한 회원 조합은 자신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본 F항 4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어떤 조합이 제작자가 상기의 규칙을 활용해 연맹 회원 조합이나 기타 어떤 조합 혹은 조합의 회원 작가들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여길 경우, 관련 조합들은 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한다.
- G. 한 연맹 회원 조합의 회원 작가가 타 연맹 회원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해당 작가는 자신이 현재 회원으로 있는 조합에 회원 지위 증명서를 신청하고, 해당 조합은 해당 작가가 공식적인 회원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당 작가가 이러한 증명서를 타 연맹 회원 조합에 제출하면 타 연맹 회원 조합의 회원 지위가 부여된다. 이러한 경로로 입회한 작가는 가입비를 면제받는다.
- 이 조합을 이용하는 작가는 복수의 연맹 회원 조합의 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 H. 어떤 연맹 회원 조합에 의해 불량 회원으로 선언되거나, 자격 정지 혹은 제명된 회원 작가는 다시 우량 회원으로 변경되거나 회원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는 여타 연맹 회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I. 최소 기본 합의서, 공정 거래 규약의 사항들, 혹은 업무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이 자신이 속한 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유죄로 판명된 경우, 이러한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불량 회원으로 선언되며, 조합에서 제명되고, 탈퇴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혹은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더해, 견책, 벌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조

치를 취하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이의제기 절차는 조합의 여타 회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J. 연맹 회원 조합들은 조합 연금 및 퇴직 저축에 있어 이동 가능 조합을 갖추기 위해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상기 G항에 따라 복수 조합의 회원이 된 작가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조합 연금 혹은 퇴직 저축에 자신이 납입한 금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제4조. 단체 교섭 협약, 공정 거래 규약, 업무 규칙

- A. 각 회원 조합은 최소 기본 합의서와 공정 거래 규약의 협상에 대해 다른 조합들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서나 규약을 체결하는 조합은 다른 조합들에게 이러한 각 합의서 및 규약 조건들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B.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조합 균일화된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이미 존재하는 규칙들은 균일화해야 한다.
- C. 최소 기본 합의서, 공정 거래 규약 혹은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비준한 조합은 다른 조합들에 비준한 내용을 전달한다. 전달받은 각 조합은 자신의 회원 작가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한다.
- D. 각 조합은 최소 기본 합의서와 공정 거래 규약에 서명한 주체들의 목록을 다른 조합들에 제공해야 한다.
- E. 특정 회원 조합의 이사회가 해당 조합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개인, 회사, 혹은 법인에 대한 집필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어문저작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의 금지를 지시하는 명령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합은 다른 조합들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른 조합들의 이사회는 현지에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모든 회원에게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전언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에 대한 집필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어문저작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의 금지를 지시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해당 명령을 최초 발의한 이사회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지속된다. 해당 이사회는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경우, 이를 철회 효력 발생일과 함께 다른 조합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연맹 협약

- A. 개정된 본 연맹 협약의 조항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효력을 가지며, 4년 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본 협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간 효력이 연장된다.
- B. 본 협약은 오직 서명단체들의 만장일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을 제안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총회 날짜의 최소 3개월 전까지 연맹 총무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맹 총무는 접수된 수정안을 총회 날짜의 최소 2개월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발송하여 각 회원 조합으로 하여금 수정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된 모든 의견과 추가 수정안은 의제 최종안에 포함된다. 총회에서 결의한 본 협약의 수정안은 각 회원 조합의 이사회에서 비준할 때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
- C. 회원 조합은 수정에 대한 총회의 결의안이 해당 조합의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다음 연맹 총회의 최소 6개월 전에 연맹 총무에게 통지하고, 총무는 이를 즉시 모든 다른 회원들에게 알린다.
- D. 한 조합이 다른 조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통지문 및 기타 자료들은 본 협약에 기입된 주소들로 발송한다. 각 조합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 작가들에게 발송하는 통지문은 회원 작가가 자신이 소속된 조합에 제출한 최종 주소로 발송한다.
- F. 어떤 회원 조합의 업무 규칙에 따라 혹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합의 회원들이 특정 개인, 회사, 혹은 법인에 집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문저작물의 판매 및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이는 다른 회원 조합의 회원 작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영화 및 TV 시나리오 크레딧 합의서

본 합의는 1998년 9월 23일에 성립됨.

본 영화 및 TV 시나리오 크레딧 합의서는 서로 다른 조합에 속한 작가들 간에 영화 및 TV의 시나리오 크레딧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절차를 확립하고 조합 간 시나리오 규칙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a) 제작자가 A국가에 해당 작품의 제작을 위한 주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A국가의 작가조합이 보유한 단체 협약에 따라 해당 작품의 첫 번째 작가를 고용하거나 혹은 어문저작물을 구매하는 경우, A국가의 조합이 시나리오 크레딧의 중재를 수행한다.
b) 제작자가 A국가에서 해당 작품의 제작을 위한 주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B국가의 작가조합이 보유한 단체 협약에 따라 해당 작품의 첫 번째 작가를 고용하거나 혹은 어문저작물을 구매하는 경우, B국가의 조합이 시나리오 크레딧의 중재를 수행하지만, B국가의 조합은 A국가의 조합에 중재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A국가의 조합은 그러한 요청에 응한다.
c) 회원 조합들 중 한 조합의 단체 협약에 시나리오 크레딧 중재 조항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조합의 단체 협약이 이러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 시나리오 크레딧 중재 조항을 가지고 있는 회원 조합이 중재를 수행한다.
2. “작가(Written by)”, “각본(Screenplay by)”, “원안(Story by)”, “영상 원안(Screen Story by)”과 같은 기존 영화 및 TV 시나리오 크레딧은 현재 개별 계약과 크레딧 매뉴얼에 따라 부여되고 있듯이 어떠한 국제적 크레딧 중재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그 이외의 크레딧에 있어서는 작품의 첫 번째 작가의 계약에 적용된 단체 협약을 보유한 조합이 정한 크레딧 규칙이 적용된다.
3. 각 조합은 다른 조합에 크레딧 중재위원들의 전체목록을 제출한다. 한 작가가 다른 조합의 목록에서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 작가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중재위원의 배제를 포함하여 크레딧 중재의 모든 절차는 기밀로 다루어진다.
4. 회원 조합들은 본 합의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작가의 고용이나 어문저작물의 구매에 대해 습득 가능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